

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9호서식] <개정 2014.5.28>

##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

|   |  |                   |
|---|--|-------------------|
| 접수번호  | 접수일  | 처리기간:             |
| 이의신청인   | 성명(법인·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)  | 주민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 등) |
|   | 주소(소재지)  | 전화번호(팩스번호)        |
|   |  | 전자우편주소            |
| 공개 또는<br>비공개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|
| 이의신청<br>사유<br><br>※ [ ]에는 해당되는 곳<br>에 ✓ 표를 합니다. | 정보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  |                   |
|   | 정보(공개[ ] 부분 공개[ ] 비공개[ ]) 결정 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.  |                   |
|   | ※ 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제3자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   |                   |
|   |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<br>[ ] 년 월 일에 정보 공개를 청구했으나, 정보 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서<br>를 받지 못했음. |                   |
| 이의신청의<br>취지 및 이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                 |

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18조제1항 또는 제21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 
제18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  
(서명 또는 인)

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 귀하

### 처리 절차



신청인

처리 기관: 각 접수기관 (정보공개 업무 담당 부서)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m<sup>2</sup> (재활용품)]